

# 김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3415호
----------	--------

제출년월일 2024. 2. .  
제출자 김포시장

## 1. 제안이유

- 상위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맞게 기존의 유사·중복조례를 통합 제정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활성화하고 지역 사회의 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등(안 제3조~제5조)
- 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시설비 등 지원, 재정지원 등, 지도·감독, 우선구매 촉진(안 제6조~제13조)
- 라.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홍보 및 포상(안 제14조~제15조)
- 마.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16조~제22조)

##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나. 관계 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 불임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라.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3. 12. 6. ~ 12. 26. (20일)
    - 나) 예고결과 : 의견 있음(불임)

2) 부서협의결과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가) 중앙부처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나) 경 기 도 : 사회적경제육성과

## 김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적·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 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시설

마.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바.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사.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3.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

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수익 또는 결과물들이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
4. 사회적경제 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사회적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회적경제의 발전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3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

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향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의 교육·홍보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김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영·노무·회계·마케팅 등 역량강화 및 지역특화사업 운영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설립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운영에 관한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 공간지원
4.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5.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6. 사회적경제와 공공분야 공모 사업의 정보·자료 제공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통합적인 경영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계 법규에 따라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등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시설비 등 지원)** 시장은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은 제외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에 부정당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변경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우선구매 촉진)**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민간으로의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와 판로개척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김포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시장은 민간의 기업, 단체, 대학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연계사업 및 활동 등에 참여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교류·협력 활동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과 교류·협력하는 민간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15조(홍보 및 포상)**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활동을 강구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개선 및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
2.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질 향상 홍보 지원
4.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주민참여 교육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활동 전개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 기여 등 모범이 되는 사회적경제 조직
2.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제16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장,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나.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가, 노동자, 참여자 대표

다.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관련분야의 전문가

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을 처리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를 각각 폐지한다.

1. 「김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김포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다음 각 호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김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중 “「김포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0조”를 “「김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로 한다.
2. 「김포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제1호가목 중 “「김포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를 “「김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로 한다.

소관 실·과·소		일자리경제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 명	일자리경제과장 이 회 숙
	팀 장 직위·성명	사회적경제팀장 김 수 희
	담 당 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노 정 주(☎2746)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 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제4조 삭제** <2010. 6. 8.>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수립된 지원계획의 내용 등이 우수한 시·도에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③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제9조(정관등)**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용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경영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의2(교육훈련 지원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용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연계기업 또는 연계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그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정 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연계기업의 책임 한계)**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업·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의2(사회적기업의 날)** ①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기업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일을 사회적기업의 날로 하며, 사회적기업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적기업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 등)** ①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 사항의 검토, 지도·감독 및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8조(인증의 취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회적기업이 아닌 자는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2.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3. 업종·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4.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5.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6. 사회적기업 관련 국제교류 협력
7.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진흥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등의 공공기관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⑧ 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본다.

⑨ 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고용노동부장관은 진흥원을 지도·감독하며, 진흥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진흥원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⑪ 진흥원의 정관, 이사회·임원, 회계,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조,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⑫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
3.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受理)
4. 제10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제22조(벌칙)** 제20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를 위반하여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20조제12항을 위반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김포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의 이념과 구성 주체, 공통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각 사회적경제 주체와 김포시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포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나. 지역사회 재생
  - 다. 남녀의 기회 평등
  - 라.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의 회복
  -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 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
  -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 아. 그 밖에 노동·복지·인권·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증진
2. “사회적경제”란 사회적·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제4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김포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김포

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바.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 당사자 협의체”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당사자 조직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기업·단체들이 공동사업, 상호부조나 상호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또는 관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포괄하는 조직 또는 각각의 조직을 말한다.

8.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사회적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수익 또는 결과물들이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

4. 사회적경제 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김포시(이하 “시” 라 한다)의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사회적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회적경제의 발전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6조(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제4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2장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제8조(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김포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2.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협력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와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현장의 실태 등에 대하여 2년 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정책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의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객관성·전문성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설립에 관한 상담
3.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교육, 홍보 등 운영지원 활동
4. 사회적경제 조직 공간지원
5.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 6.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 7. 사회적경제와 공공분야 공모 사업의 정보·자료 제공
-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가 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교육훈련 및 연구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등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 및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사회적경제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사회적경제 활동을 수행·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설비 등 지원)** ① 시장은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 또는 무상 임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및 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에 관한 기금(이하 “사회투자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투자기금을 설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금의 일부를 사회투자기금의 용도로 활용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투자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금운용이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또는 그밖에 부정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변경하거나 이미 교부

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우선구매 촉진)**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민간으로의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우선구매와 판로개척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20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확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와 판로개척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김포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시장은 민간의 기업, 단체, 대학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연계활동 등에 참여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교류·협력 활동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과 교류·협력하는 민간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16조(사회적경제조직 당사자 협의체 설립)** 관내 사회적경제조직 당사자들은 각 부문 및 업종별로 당사자협의체 구성 및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당사자협의체는 각 부문 연대하여 지역 생태계조성과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자율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제17조(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각 부문 및 업종 단위 당사자 협의체는 관내 사회적경제조직을 대표하는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를 설립하여 민간의 공식적 대표 단위이자 관의 정책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18조(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등의 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경영 활동에 관한 지원 및 해당 부문의 활성화 전략 수립 등을 위하여 광역 및 자치구 단위, 업종 단위를 기준으로 설립하는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나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가 민간의 주도로 설립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홍보 및 포상)**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활동을 강구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개선 및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
2.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질 향상 홍보 지원
4.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주민참여 교육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활동 전개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

2.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3장 사회적경제위원회

**제20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및 사회적경제 기업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및 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와 경기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민협치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9.3>

1. 제3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
2.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가, 노동자, 참여자 대표
3. 사회적경제관련 전문가
4.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소관부서장이 된다.

**제22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전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전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전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24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기타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2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 제4장 통합지원체계 구축

**제27조(통합지원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각 분야별 협력과 연대에 의한 상승효과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 등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민간의 지원조직 등을 대표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김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3조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김포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른 김포시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연계사업)**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 및 연계기업과 공동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계기업으로 다양하고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시장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8조(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업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운영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입법예고 의견 및 검토결과**

제출자	내 용	검토결과
<p>상생연대 사회적협동조합 외 33개 업체</p>	<p><b>제1조(목적)</b>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울 ~ 설립·<u>육성</u>·운영으로 변경 요청                      ○ 사유: 육성 의지를 담아야 함</p>	<p>○ 미수용                      - 「김포시 사회적경제 <u>육성</u>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명에서 육성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표명함</p>
	<p><b>제2조(정의)</b>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기업·단체들이 공동사업, 상호부조나 상호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또는 관계망을 말한다                      (추가요청)                      ○ 사유: 민간의 다양한 참여방식 중 최소한의 규정 필요, 입법예고안 중 어디에도 민간의 자발적 참여의지를 존중하고 함께 만들어간다는 내용이 없음</p>	<p>○ 미수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위법에 근거하여 용어 정비한 사항임</p>
	<p><b>제6조(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b>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김포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변경요청)                      ○ 사유: 기본계획과 연도별 계획으로 실행의지를 구체화해야 함</p>	<p>○ 미수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u>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u>, 동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 특성과 책무에 맞는 현실적 계획을 수립하고 상위법에 맞게 조례 정비함                      -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큰 틀에서 보면 변동된 것이 아니라 <u>시에서 실제 추진할 수 있는 보다 실행 가능한 범위</u>로 구성함</p>
	<p><b>제6조(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b></p>	<p>○ 미수용</p>

제출자	내 용	검토결과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현장의 실태 등에 대하여 2년 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정책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⑤ 시장은 제4항의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객관성·전문성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추가요청)</p> <p>○ 사유: 실태조사와 평가, 반영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추진방식임.</p>	<p>-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6조(실태조사)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어 중복되는 사항임</p>
	<p><b>제9조(교육·훈련 지원)</b></p> <p>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 및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시산하 투자·출연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사회적경제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사회적경제 활동을 수행·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추가 요청)</p> <p>○ 사유: 기존 사회적경제 영역의 육성된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면서도 상식적임.</p>	<p>○ 미수용</p> <p>-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위법에 맞게 정비</p> <p>- <b>제9조(교육·훈련 지원)</b> 시장은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등 <u>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u></p> <p>- 또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p>
	<p><b>제16조(사회적경제조직 당사자 협의체 설립)</b> 관내 사회적경제조직 당사자들</p>	<p>○ 미수용</p> <p>-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위법에 근</p>

제출자	내 용	검토결과
	<p>은 각 부문 및 업종별로 당사자협의체 구성 및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당사자협의체는 각 부문 연대하여 지역 생태계조성과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자율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한다.</p> <p><b>제17조(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b> 각 부문 및 업종 단위 당사자 협의체는 관내 사회적경제조직을 대표하는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를 설립하여 민간의 공식적 대표 단위이자 관의 정책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p> <p><b>제18조(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등의 지원)</b>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경영 활동에 관한 지원 및 해당 부문의 활성화 전략 수립 등을 위하여 광역 및 자치구 단위, 업종 단위를 기준으로 설립하는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나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가 민간의 주도로 설립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추가요청)</p> <p>○ 사유: 시대적 대의가 된 사회적경제 육성은 행정의 지원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하랴 수 없다. 이미 육성된 사회적경제 영역의 자발적인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해야 본 조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바 위 조항들은 필수임.</p>	<p>거하여 조례의 불필요한 조항 정비함</p> <p>- <b>제4조(시장의 책무)</b>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u>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u>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 <b>제5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b>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u>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 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u>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 민간네트워크, 사회적경제 당사자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의 책무,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에 포함함</p>
	<p><b>제17조(위원회의 구성)</b></p> <p>2. 김포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p> <p>4. 민간위원 30% 이상 참여해야 한다.</p> <p>(추가요청)</p> <p>○ 사유 : 민간의 참여의지를 구체화해야 함.</p>	<p>○ 미수용</p> <p>- 주요 위원회의 기능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심의가 경기도사회적경제위원회로 절차변경(2019년 이관)됨</p> <p>- 「김포시의회 의원 위원회 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외</p> <p>- 위원회 구성은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 활동가, 노동자, 참여자, 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임</p>
	<p><b>제17조(위원회의 구성)</b></p>	<p>○ 미수용</p>

제출자	내 용	검토결과
	<p>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추가요청)</p> <p>○ 사유: 심의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해치며 자칫 시장의 재량이 남용될 소지가 있음.</p>	<p>- 안건이 있을 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비상설 위원회도 절차에 맞게 법에 따라 구성, 개최하므로 심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저해하거나 시장의 재량이 반영되는 일은 없음</p> <p>- 비상설 위원회로 위원회의 임기 조항 불필요</p>
	<p><b>제20조(위원회의 운영)</b></p> <p>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상시적 민관실무협의회를 두고, 필요한 경우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추가요청)</p> <p>○ 사유: 민간의 참여의지를 구체화하는 가장 중요한 협의채널 필요</p>	<p>○ 미수용</p> <p>- 민관실무협의회의 경우, 안건이 발생하거나 필요시 관련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으므로 상시 설치 불필요</p>